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94-30호)

제정 1991. 2. 18 노동부고시 91-15호

개정 1992. 12. 29 노동부고시 92-48호

개정 1994. 6. 23 노동부고시 94-3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설비 및 공사의 범위와 계획서의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법 제48조제1항에서의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 등을 설치·이전”이라 함은 일관의 제조설비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등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등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 나.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조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 다. 위험물질 처리를 위한 세정설비, 소각설비, 세진설비를 포함한 일관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 법 제48조제1항에서 “공사착공”이라 함은 계획서 심사의 대상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시작을 말한다.
- 법 제48조제2항에서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규칙 제1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48조제3항에서 “공사착공”이라 함은

특별부록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을 의미하며, 대지 정지, 가설사무소 건설 등 공사준비기간은 공사의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계획서제출 대상설비 및 공사의 범위 등

제 3 조(대상업종) 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서제출 대상업종의 상세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 4 조(화학설비) 규칙 제120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안전규칙 별표 3의 화학설비로서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별표 2의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량의 10배로 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화학설비가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질이 2종 이상이고 개개의 양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양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그 값이 1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주) R : 산출값

C_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_n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제 5 조(건조설비) 규칙 제120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것을 말한다.

1.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이 함유된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내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20킬로그램 이상
 -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2세제곱미터 이상
 - 다. 전기정격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

제 6 조(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① 규칙 제120조제2항제5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로서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량의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국소배기장치라 함은 제1항의 관련설비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후드, 덕트, 배풍기 및 제진설비, 세정설비, 흡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 7 조(공사) 규칙 제120조제3항제7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최대인양하중 30톤 이상의 고정식 크레인(이동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 3 장 계획서의 제출 등

제 8 조(첨부서류) ① 사업주가 규칙 제121조제1항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특별부록

할 도면 및 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 ② 사업주가 규칙 제121조제2항에 의거 공단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통사항과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주가 설계 변경 또는 작업공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하되 그 변경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한다

제9조(작성기준) ① 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우란과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작성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2종 이상의 도면 및 서류를 1종의 도면 및 서류로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제출부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면제) 규칙 제1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동규칙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기계 등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 4 장 계획서의 심사 등

제12조(검토) 공단이 규칙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제출기간 경과여부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등) ① 공단은 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분야
2. 법 제48조제3항 관련분야
3. 기타 계획서의 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분야

② 공단은 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분야 중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심사위원을 제2항의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중 서류의 보완 기타 추가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은 규칙 제122조제1항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심사기준) ① 계획서의 심사기준은 법, 영, 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정 등에 의한다.

②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획서의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심사결과 조치

제16조(심사결과 구분) ① 계획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2. 공사착공 중지 : 기계·설비의 설치장소, 건설물의 안전설비가 부적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부록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3. 공사계획 변경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위반하여 그 개선대책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유해·위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심사필인) 공단은 심사 결과 제16조제1항 제1호의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심사필인을 해당 도면 및 서류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날인 표시한 도면 및 서류 1부씩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심사 결과 공사착공 중지 또는 공사계획 변경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 심사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공사착공 중지 또는 공사계획 변경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착공중지 또는 공사계획변경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중지 또는 공사계획변경 명령의 이유 및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 신청) ① 사업주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공사계획변경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인을 제거한 후 관련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1조

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 등을 공단에 재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에 따르는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요청을 할 때와 같다.

제20조(서류보존) 사업주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심사와 관련된 서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5년간
2. 규칙 제120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준공 후 2년간

제 6 장 확 인

제21조(확인의 시기) 법 제48조제5항 및 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시운전단계일 때
2.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건설공사중 위험한 공정일 때

제22조(확인의 신청)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제5항 및 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요청일 3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인의 시기를 사업주의 확인요청일로 본다.

제23조(확인실시일정의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실시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실시일정

특별부록

을 사업주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확인실시일정을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확인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24조(확인) ①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내용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사항을 부기하여 조건부 적정통지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결과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의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고사항

제25조(보고 등) ① 공단은 규칙 제122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의한 계획서의 접수·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노동부장관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에게는 전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

는 사업주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2. 계획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 또는 사업주

3. 제14조에 의한 서류보완 미이행 사업장

4. 제22조제1항에 의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주

5. 제24조제1항에 의한 확인을 거부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③ 지방노동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수료

제26조(수수료 등) ① 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4. 7. 1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고시 제92-48호)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 3조(폐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고시 제92-48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부록

[별표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및 작성기준(제8조제2항 관련)

대상기준	구 분	제 출 서 류	작 성 기 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공 통	1. 공사개요서(별지 제18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공사 설계도면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양중장비, 가설도로, 기타 가설물 표기) — 평면도, 입면도(동일 도면은 1장으로 제출) — 종단면도, 종평면도
		2. 항타 작업개요서(별지 제19호 서식)	
		3. 거푸집, 지보공 작업개요서(별지 제20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구조물 거푸집지보공 조립표준상세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보공 구조의 재질, 설치간격, 베틴구조 — 주요 수직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측압계산서
		4. 비계, 가설통로 설치작업개요서(별지 제2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 및 낙하방지 가시설물 표준상세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구조 상세도 — 발판, 사다리, 난간대, 계단참, 가설통로 구조 상세도 — 수직, 수평개구부 추락방지시설 표준상세도
		5. 굴착작업개요서(별지 제2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단면도 첨부 ○ 지질조사서 첨부 ○ 흙막이지보공 조립도 첨부 ○ 발파공법개요서 첨부 ○ 토사운반계획개요서 첨부 ○ 배수계획 첨부
		6. 양중 및 굴착장비 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	
		7. 공정표(별지 제24호 서식)	
		8.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5호 서식)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첨부 ○ 안전보건교육계획서 첨부 ○ 개인보호구지급계획서 첨부(별지 제26호 서식)
		10. 감전재해방지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동력단선도 첨부 ○ 표준접지도 및 누전차단기 회로도 첨부 ○ 전격방지기 사양서 첨부

특별부록

대상기준	구 분	제출서류	작성기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 공사	1. 해체작업개요서(별지 제27호 서식)	○ 해체공법·시방서 첨부 — 해체공법, 기계 등의 개요 — 전도시 안전대책 —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안전대책	
	2. 철골공사개요서(별지 제238호 서식)	○ 철골작업계획서 첨부 — 철골자재 운반, 적치 계획 — 인양, 조립, 보양방식 — 철골조립표준도(입면, 평면부분 상세도)	
	3. P.C공사 작업개요서	○ 부재별 규격, 단위중량표 및 인양 HOOK 구조상 세도 첨부 ○ 부재이음구조상세도 첨부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1. 교량공사작업개요서(별지 제29호 서식)		
	2. 하부공 안전계획서 가. 기초공계획서	○ 교각 및 교대부위 지질조사서 첨부 — 재하시험결과서 — 지질주상도 ○ 기초구조 형식 및 시공도면 첨부 — 파일 및 지지지반 구조형식 — 지지력구조 검토서 — 기초구조 시공도면상세도 ○ 수중발파 안전계획서 첨부 — 잠수안전계획서 — 수중발파 시방	
	나. 교대 및 교각공사 계획서	○ 교각 시공도면 첨부 — 단면도, 평면도, 철근상세도 — 거푸집지보공 가설구조상세도 — 교각 및 교대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 비계구조 및 가설통로 구조상세도	
	다. 가설도로계획서	○ 평면도 및 다짐도 시방 첨부	
3. 상부공 안전계획서 가. 라멘교량	3. 상부공 안전계획서 가. 라멘교량	○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 지보공 구조상세도 및 지반다짐계획 — 타설측압구조 계산서 — 타설순서 계획 ○ 추락방지시설 및 통로, 사다리구조상세도	

특별부록

대상기준	구 분	제출서류	작성기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나. 강교량(STEEL BOX GI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재설치 계획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중량 및 단위길이 등 제작사양서 — 크레인 사양서 — 거치 안전계획서 — 추락방지용 안전대 설치구조 ○ 가설통로, 발판, 사다리구조 등 가시설물구조 상세도 첨부
		다. P.C BEAM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M 설치계획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중량 및 단위길이 등 제작사양서 — 크레인 사양서 — 전도방지용 브라켓 구조도 — 추락방지용 안전대 설치구조 ○ 가설통로, 발판, 사다리 등 가시설물 구조상세도 첨부
		라. F.C.M 교량 (FREE CANTILEVER METHOD) — 연속내민보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대차 설치구조 도면 — 세그먼트(SEGMENT) 표준단면도 — 인장방식 시방 및 자키(JACK)사양서 — 교대작업 TABLE 구조상세도 — 가시설물 표준도 * 가설통로, 발판, 사다리 등 구조상세도
		마. I.L.M 교량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 연속압출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LAUNCHING HOUSE) 평면도 — 주두부(추진고=NOSE) 구조상세도 — 압출 세그먼트(SEGMENT) 단면도 — 상부 스라브 단부 추락방지시설 표준도
		바. M.S.S 교량 (MOVABLE STAGING SYSTEM) — 이동가설지보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지보공 구조상세도 — 유압자키(JACK)사양서 — 콘크리트 스라브 표준단면도 — 상부 스라브 단부 추락방지시설 표준도
		사. F.S.M 교량 (FULL STAGING METHOD) — 동바리지보공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설콘크리트 단위중량 구조계산서 — 지보공구조상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관비계구조도 • B.T 비계구조도 • 합성비계구조도

특별부록

대상기준	구 분	제출 서류	작성 기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5. 통신구, 공동구 도수로 터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계획서 : NATM과 동일 ○ 수직갱(SHAFT) 및 사갱 시공계획서 : 유류저장탱크공사와 동일
	1. 댐공사 작업개요서 (별지 제31호 서식)		
	2. 기초보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법 및 구조 ○ 그라우팅의 종류, 단면 및 평면배치
	3. 체결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길이 50M 이상의 교량과 같음
	4. 가배수로 터널의 발파작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공사의 발파작업개요와 같음
	5. 전력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 송·배전 평면도 ○ 중요시설물 전기용량 LIST ○ 가공전선표준도
	6. 가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공사 가설설비계획과 같음
	1. 압기공법개요서(별지 제32호 서식)		
	2. 송·배기설비 등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단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압축, 정화장치, 자동경보장치, 송배기관, 배관 등을 표시
	3. 작업실 작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내 작업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끝 침하방법 — 굴착방법 및 순서 — 잔토처리계획
개이지압력 1.3kg/cm ² 이상인 잠함공사	4. 구호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에 필요한 기계 등 점검 및 장비계획 ○ 구호에 필요한 훈련실시계획
	5. 벼력반출설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력반출에 따른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릭 — 크레인 — 토사호퍼의 설치 등
	1. 토류벽 구조상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수공법 시방서 ○ 토류벽시공 표준도면 ○ 추락, 낙하방지용 가시설물 표준상세도 ○ 토압계산서(토류벽구조 지지력 검토)
	2. 토공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공판구조 상세도 ○ 램프(RAMP) 가시설 표준도 ○ 토사운반계획서
	3. 특수공법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 PINNING 시방서 ○ PIPE MESSER 시방서
	4. 기초구조표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TH ANCHOR 구조사양서 ○ 거푸집구조 표준도
	5. 비상배수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집수량 산정기준 ○ 배수능력 판단 및 배수 루트(ROUTE) 기준

특별부록

[별지 제18호 서식]

공사개요서

서 공 업 체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이 사			주민등록번호				
	본 사 소재지							
현 장	현 장 명			전 화 번 호				
	현 장 소재지							
	공 사 기 간			~	(년 개월)			
발 주 처					공 사 금 액			
설 계 자					전 화 번 호			
감 리 자					전 화 번 호			
공 사 개 요	대상구조물	구 조	개 소	총 수		굴착깊이 (m)	최고높이 (m)	비 고
				지하	지상			
기 타 특 수								
구 조 물 개 요								
주 요 공 법								

특별부록

[별지 제19호 서식]

작업개요

항 타 작업 개 요 서						
말뚝의 종류	길 이	직 경	본 수	설 계 내 력	공 사 기 간	적 요
항 타 기 계 의 종 류						
높 이						
대 수						
기 타 (공 법 등)						

특별부록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개요서

거푸집지보공 작업개요서	거 푸 집 수 량				콘크리트 물량		m^3
	지 주 의 높 이		표 준	m		최 고	m
	표 준 총		조 립				
	공 사 기 간		해 체				
지보공의 종류 (해당항목에 ○표)	1) 파이프서포트() 2) 원서포트() 3) 단판() 4) 조립강주() 5) 형틀조() 6) 목재지주() 7) 기타()						
	재 질 치 수	거 푸 집	cm ×		지 주	cm	
		장 선	cm		수평연결재	cm	
	띠 장	cm		사 재	cm		
구 분	각부의 구조·조립 및 보강내용				별첨 도면	설계하중 및 허용응력계산	
각 부	활동방지, 침하방지 및 사재의 설치방법						
지 상 주 단	활동방지를 위한 설치방법						
접 속 연 결 부 부	긴결재, 연결재의 설치방법						
수 연 평 결	부재의 설치방법						
기 필 의 보 요 타 에 해 강	(1) 개구부의 조립방법 (2) 단상조립의 조치(지주간의 긴결 고정) (3) 곡면형틀에서 지주의 부상 방지						

특별부록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개요서

비계·가설통로 설치작업계획서								
비 계 의 구 조	높 이	용 도	사용기간	최 대 적 재 하 중	재 질 및 치 수			
본 비 계	m		—	kg	재 질		규 격	
틀 비 계	m		—	kg	종 류	형	높 이	
					폭			제 조 자
달 대 비 계 (달 비 계)	지 상 m		—	걸 이 재	재 료		규 격	
				횡 목	재 료		규 격	
				발 판	재 료		폭	
발 판	재 료	단 위 재 폭	두께	전체폭	결 속 방 법	최대적재하중 (ISP당)		
	강 판 재							
	목 재							
	합 판							
가 설 통로	종 류	구 배	폭	높 이	미끄럼방지조치	고정방법	난간높이	
	경 사 로							
	계 단							
낙 화 물 방 지 망	설치높이	단 수	망의 재질	망의 규격	보호시트 설치	비 고		
추 락 · 방 지 설 비	설 치 장 소			재 료	규 격	비 고		
가 공 전 선	거 리		높 이	전 압		방 호 방 법		
비 계 작 업	성				소		교육	
안 전 담 당 자	명				속		이수	
							현황	

특별부록

[별지 제22호 서식]

작업개요서

굴착공사 작업개요서	굴착토량	m^3						
	굴착심도	m						
	공법형식	공법						
	공사기간	흙막이벽공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흙막이벽공사		구분	띠장		버팀대			
흙막이벽의종류			설치깊이		설치깊이			
길이	1단							
근입깊이	2단							
타설방법	3단							
향타방법								
오픈컷트절취 공법의경우		굴착공법						
		구분 단계	G·L로부터 길이 (m)	굴착토량 (m^3)	굴착기계명	기계대수	1인굴착토량 (m^3)	비고
법면의구배		제1차						
법면보호방법		제2차						
진입로경사		제3차						
배수공법 의개요								
적요								

특별부록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장비 설치 계획서

장비명			사용 대수
형식 및 규격			
설치장소			
사용기간			
안전장치의 종류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주) ① 호이스트, 리프트, 곤도라, CRANE, TBM, JUMBO DRILL, TOWER CRANE 등 장비별로 기재
 ② 장비별 사양서 첨부

[별지 제24호 서식]

공정표

구분	년
	월
공종	
공정률	
중요장비 투입계획	
중점안전 관리사항	

특별부록

[별지 제25호 서식]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

발 주 처 1. 일반건설 2. 중건설 3. 철도 및 궤도 신설 안 전 관 리 비 (기 본 비 용) 대 상 액 (1) + (2) + (3)	공 사 금 액 내 역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 급 재 료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기 타	
		계	

2. 세부사용계획

구 분	안 전 관 리 비	비 율(%)
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한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인건비		%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소 계 (나)+(다)		
라.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직무교육, 사내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 위생설비, 구급기체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

주) 세부항목별 사용계획 첨부(항목, 수량, 금액)

특별부록

[별지 제26호 서식]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직종 					

특별부록

[별지 제27호 서식]

작업개요서

건물 등의 해체 작업 개요서 해체 공법 개요 해체 기계 해체 순서 (해당항목에 ○표)	해체 건물 개요 해체 기 해체 기 해체 순서 (해당항목에 ○표)	구조 : 지상 : 층 규모 최고층고 m, 표준층고 m	
		최고높이 m 지상에서의 깊이 m	
		해체 공사 기간	
		지상 지하	
가설 안전 설비 (해당항목에 ○표) 설비 표	기계의 종류 능력, 대수		
	보조 기계의 유무 종류, 대수		
	1. 최상층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체()		
	2. 중앙부 해체 후 외벽 전도()		
	3. 기타()		
	1. 외부비계(낙하방지시설 포함)() 2. 방음차단벽() 7. 환기설비() 3. 방음시트() 8. 소화기() 4. 보호시트() 9. 가스용단설비() 5. 소음대책() 10. 양중설비() 6. 살수설비() 11. 기타()		
공방대 해지책			

특별부록

[별지 제28호 서식]

작업개요서

		지하	총	지상	총	옥탑	총
철골공사 개요서		지면에서 철골부재의 최고높이					
		철골총중량			철골의 개수	본	
		철골최대부재중량			양중기최대작업반경		m
		철골조립기간			현장용접의유무		
볼트, 용접집합기간			유	.	무		
기계 및 조립	조립	기계의 종류 및 인양능력, 대수					
	보조기계의 유무 및 종류						
	기계	정치식의 경우(건물 슬라브에 설치 또는 지					
	설치	주구대에 설치를 상세히 명기)					
	방법	이동식의 경우(지반이 악조건인 경우 지반개					
방법	량과 철판을 끼우는 등의 검토)						
	조립	1. 수평으로 조립하는 방식이고 한번에 최상층까지 조립하는 방법					
	방법	2. 수평으로 조립하는 방식이고 지하와 지상으로 분할하여 조립하는 방법					
	(해당항목 ○표로표기)	3. 수평으로 조립하는 방식이고 콘크리트 공사와 병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조립하는 방식					
		4. 기타					
가설 및 안전 설비	가설 설비 (○ 표로 표기)	설치하는 가설설비 종류	1. 안전대 부착설비	2. 작업통로			
	안전 설비 (○ 표로 표기)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3. 보호율	4. 재료적치장			
			1. 수평보호철망	2. 안전네트	3. 수직보호망		
상하작업	조립시에 상하작업의 유무		유				무
	상하동시작업의 작업종류		상		하		
	안전대책						

특별부록

[별지 제29호 서식]

작업개요서

교량공사 개요서	공법개요				
	공 사 내 역	하부공	기초형식		단면적 m ²
			교각	각	
		상부공	슬라브형식		최대높이 m
			특수구조		
		지보	동바리지보공 가설벤트개소		, 연장 m

세부사항

하부공 개요	파일(PILE) 및 기초형식	
	교각거푸집구조	
	개요	
	기초지내력검사 결과(P. B. T 등)	
상부공 시공특성	지보공구조개요	
	슬라브(상판)	
적요 (가체절, 코퍼댐 등 현장특수성)	특수공법개요	

특별부록

[별지 제30호 서식]

작업개요서

터널공사 개요서	공법 : 터널구간 — 개착구간 —				
	1. 공사개요				
	터널구간	연장	m,	개소	
		환기구	굴착심도 :	m,	개소
		정차장	굴착심도 :	m, 연장	m,
	개착구간	굴착단면	폭 :	m, 깊이 :	
		장기	재설	토류벽구조 :	
		시기	준	지보공구조 :	
	2. 세부사항				
	터널구간	시추공	시추공수 :	공, 시추위치 :	
		암질총후표준	터널출입구부위 : 중앙부위 :		
		굴착표준단면도	전단면(S) : m^2 , 상부반단면(S1) : m^2 하부반단면(S2) : m^2		
	환기용량기준 / 1발파	발파후 GAS	$m^3/1$ 발파		
	개착구간	토사반출계획개요			
		배수계획개요			
적요 (현장의 특수성 및 특수공법)					

주) 제출대상—지하철, 산악터널, 도수로, 유류저장 탱크

특별부록

[별지 제31호 서식]

작업개요서

댐 공사 작업 개요서	<input type="radio"/> 구조적 특성 : <input type="radio"/> 공법 개요 :	
1. 구조물 시공내용		
가체 철공	방식 : 연장 : 개소 :	
기초 공사	<input type="radio"/> 기초형식 : <input type="radio"/> 콘크리트 물량 m^2	
본체 공사	<input type="radio"/> 전체높이 : m <input type="radio"/> Apporn의 최대폭 : m <input type="radio"/> 여수토 개소	<input type="radio"/> 콘크리트 물량 : m^2 길이 : m
Grouting 공사	<input type="radio"/> Curtain grouting 개소 <input type="radio"/> Consolidation grouting 개소	
발파 공사	<input type="radio"/> 발파대상물량 m^2 <input type="radio"/> 화약사용량 kg	<input type="radio"/> 암질구분 <input type="radio"/> 화약종류
2. 가설 PLANT 설비		
Batch Plant	<input type="radio"/> 평면적 m^2 <input type="radio"/> 콘크리트 생산능력(평균) : $m^3/일$	
변전소	<input type="radio"/> 동력용량 : KW <input type="radio"/> 설치개소 :	
Cable Crane	<input type="radio"/> 설치거리 m <input type="radio"/> 고정탑개수	<input type="radio"/> 이동탑개소

특별부록

[별지 제32호 서식]

작업개요서

압기 공법 개요서	공법 종류				
	깊이 또는 길이				
	굴착 공법				
	예정기압		상시	kg/cm ² , 최고	kg/cm ²
	작업 예정 인원				
작업 기간					
작업 실	쉴드		전체 단면적	m ²	
			작업 실 면적	m ²	
			작업 실 천정고	m	
기갑 실형상, 치수					
샤프트 형상, 치수					
압기 실형상, 치수					
송기설비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		
종류	성능	대수	종류	성능	대수
송기관·배기관 배치					
송기관 직경			mm	송기관 경	mm
수전용량					
적요					
현장 특수성 등					

특별부록

대상기준	구 분	제 출 서 류	작 성 기 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아. 사장교 (CABLE STAYED) 자. 현수교(SUSPE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공 시공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재 사양 및 허용인장력 구조계산서 • 앵커(ANCHOR) 구조 사양서 • 주탑구조 시공시방서, 단면도, 평면도 • 주탑 및 스ラ브 콘크리트 타설양생계획 • 운반, 인양선 사양 바지선, 폰툰선, 크레인선 — 주탑구조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 LIST 및 BOLTING 구조상세도 • 스ラ브 앵커(ANCHOR) 구조상세도 • 인장재 사양 및 허용인장응력구조상세도 —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타설물량 계획 • 양생기준 — 운반, 인양선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선, 폰툰선, 크레인선
터널공사		1. 터널공사개요서(별 지 제30호 서식) 2. 지하철공사 가. 터널공(NA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질주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추공 위치, 암층후 — 터널위치 평면도 — 터널 종·평면도 ○ 터널굴착 단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단면도 — 반단면도(상부 반단면, 하부 반단면) ○ 발파표준도(PATT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별 표준도 ○ 천공장비사양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MBO DRILL, T.B.M ○ 환기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물량산출서 — 환풍, 송풍기 설치구조 표준 ○ 조명설치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개내부, 조명설치 기준 — 환기구, 정차장 조명설치 기준 ○ 환기구 굴착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설표준도(발판, 통로, 사다리구조상세도) — 토사, 벼류운반시설 표준도 — 크레인, 리프트 설치구조사양서

특별부록

대상기준	구 분	제 출 서 류	작 성 기 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차장구간 시공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류벽 시공표준도 — 토사, 벼락운반시설 표준도 — 토사운반 계획 ○ 가설강재지보공 표준도 ○ 사다리, 통로, 작업발판 등 가시설 표준도 ○ 계측관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단침하 측정 — 지중침하 측정 — 록볼트 인발응력 측정 — 콘크리트 부착응력 측정 — 내공변위 측정 — 지표면침하 측정
	나. 터널공(T.B.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M 장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양서 — 레일 설치표준도 — T.B.M 전기장치 안전계획서 ○ 기타사항 : NATM과 동일
	다. 터널공(SHI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ELD 장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양서 — 벼락처리 콘베이어 구조상세도 — 롯드 헤드 사양 및 실드(감옷) 표준도 ○ 기타사항 : NATM과 동일
	3. 산악터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계획서 : NATM과 동일 ○ 개구부 시공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절토구간 표준단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설치도면 * 도수로, 측구 설치구조도면 * 낙반, 슬라이딩 방지 계획 * 옹벽시공 안전계획 및 거푸집구조 표준도 * 개구구조물 시공도면 및 거푸집구조 표준도
	4. 유류저장탱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굴착시공 표준도면 ○ 수직갱 시공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갱 (SHAFT) 구조상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표준도 (PATTERN) * 벼락처리장비, 설비구조 사양서 * 강재가설구조 표준도 * 통로, 사다리 등 가시설구조 표준도 ○ 기타사항 : NATM과 동일

특별부록

〈노동부고시 제199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법 제34조)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법 제48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년 6월 30일

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1.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수수료

(단위 : 원)

대상	검사 종류 별 수수료				
	설계검사		완성·성능·정기검사		
	규모	금액	규모	금액	
크레인	천정크레인	정격하중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18,000 157,000	정격하중 1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53,000 58,000 68,000
	호이스트크레인		70,000	정격하중 5톤 미만 5톤 이상	45,000 53,000
	타워 및 지브크레인 등	정격하중 50톤 미만 50톤 이상	89,000 120,000 78,000	정격하중 10톤 미만 50톤 미만 50톤 이상	55,000 58,000 66,000 45,000
	리프트			내용적	
	압력용기		140,000	5m ³ 미만 30m ³ 미만 30m ³ 이상	30,000 38,000 46,000
	프레스	압력능력 200톤 미만 200톤 이상	89,000 120,000	압력능력 50톤 미만 200톤 미만 200톤 이상	26,000 32,000 47,000
인	보일러		140,00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1조의 별표22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에 따른다.	

특별부록

(별첨 1)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단위 : 원)

심 사 대 상	규 모	수 수료
종 류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응집고체연료생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계 500Kw 미만 나.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계 2,000Kw 미만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계 2,000Kw 이상	8,400 123,000 183,000
2. 상기사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3.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4. 상기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5.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가.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나.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다.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6.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대상교량 1개소	44,000
7.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m 미만 나. 길이 500m 미만 다. 길이 500m 이상	44,000 58,000 67,000
8. 제방높이 20미터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제방높이 50m 미만 나. 제방높이 50m 이상	58,000 67,000
9. 게이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 이상인 잠함공사	—	44,000
10.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11. 기타 건설설비·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작업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가. 연건설장비가동일수 : 60일 미만 나. 연건설장비가동일수 : 180일 미만 다. 연건설장비가동일수 : 180일 이상	44,000 58,000 67,000

3.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고시 제91-17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